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1.03.16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3.1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III .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트 킵스칸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16811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예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의거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혼합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모자형 구조]

	주식모	채권모	채권재간접모	중기채권모
칭기스칸퇴직연금	4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칭기스칸채권혼합	40%이하	-	-	80%이하
트러스톤사모주식	100%이하	-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트러스톤 증권모 투자신탁 [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채권에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하여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TB지수×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합니다.
트러스톤 증권모 투자신탁 [채권- 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60%이상 투자 단,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공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 투자
	투자목적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TB지수×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 대비 운용성과가 우수하고, 각각의 벤치마크 대비 운용성과가 우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합니다.
트러스톤 증권모 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이상 투자, 채권 40%이하 투자
	투자목적	주식에 60%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OSPI지수×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합니다.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모 투자신탁 [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채권에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하여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KIS국고채1~2년×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을 1년~1.5년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 6308-05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80%이하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40%이하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3)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6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2)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4)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집합투자 증권	5%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7)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8) 증권 차입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0)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11)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취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 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다만,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공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 투자함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5)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7)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8) 증권 차입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0)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3)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6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 증권	5%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8)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9) 증권 차입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1)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트러스트증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6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2)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4) 채권관련 장내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집합투자증권	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7)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8) 증권 차입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10) 유동성자산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11)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취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채권 및 채권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하여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및 채권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 (KTB지수×60%) + (KOSPI지수×35%) + (Call금리×5%)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채권 및 채권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펀드와 채권시장 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국고채 지수인 KTB지수를 비교지수로 지정하고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에 투자하므로 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KOSPI지수와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투자전략

-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투자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단기 매매보다는 만기보유전략(Buy & Hold전략)으로 적정 듀레이션 관리 및 적립식 매수(Cost-Average 관리)를 합니다.

□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전략

- 금리 전망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표 듀레이션 조정을 하며 만기보유전략(Buy & Hold전략) 외에 국채선물 등을 활용한 차익거래 등 추가전략을 수행합니다. 또한 rolling effect를 추구하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채 등의 일부 신용 투자를 병행하여 투자합니다.

□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전략

(1)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1년~1.5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on Value Trading)은 시장 기대의 쓸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① 수익롤곡선 전략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할인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롤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② 스프레드 매매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120일 이내 이동평균 스프레드와 %rank 수치들을 파악하여 특정 만기 구간, 섹터 혹은 종목의 과매도, 과매수 국면을 포착합니다.
- 단기차트 분석에만 의존할 경우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분석 기간을 확장하고 펀더멘탈, 금융환경, 수급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3) 개별종목분석을 통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 및 차익거래 기회 등을 통한 이익 추구합니다.

(4) 시장 예측을 통한 단기적인 방향성 투자 자제합니다.

용어	내용
만기보유전략 (Buy & Hold 전략)	만기보유전략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 시 미리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입니다.
듀레이션 (가중평균만기)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집니다.
Cost-Average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평균매입가를 평균 주가보다 낮추는 이익극대화 방법입니다.
Rolling effect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할인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금리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같이 잔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물렁효과라 합니다.
--	--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하를 채권 및 채권관련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 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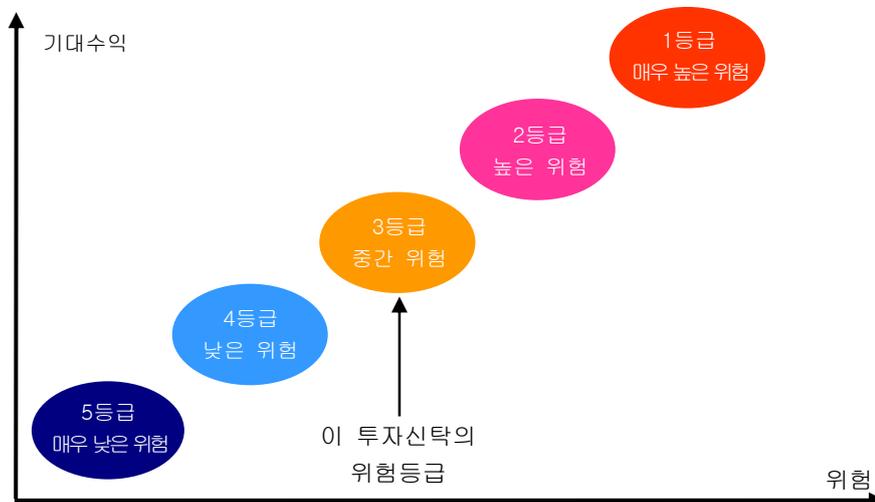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지난 후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채권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1.02.28 현재, 단위:개,억원)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황성택	46세	CIO	3	5,911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경력 94.01~98.03 현대종합금융 선임운용역 98.05~00.04 아이엠엠투자자문(現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이사 00.04~01.03 맥쿼리IMM자산운용 주식운용이사 01.04~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이사/사장/CIO 08.08~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자문위원 08.09~현재 서울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센터 자문위원 자격증 투자자자산운용사
여종훈	38세	채권 운용 팀장	2	700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경력 99.07~08.04 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08.05~10.12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1.01~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신용분석사
안홍익	36세	주식 운용 본부 3 팀 과장	6	6,437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 경력 03.01~05.05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5~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3팀 과장 자격증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채권운용팀과 주식운용본부 3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의 운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CIO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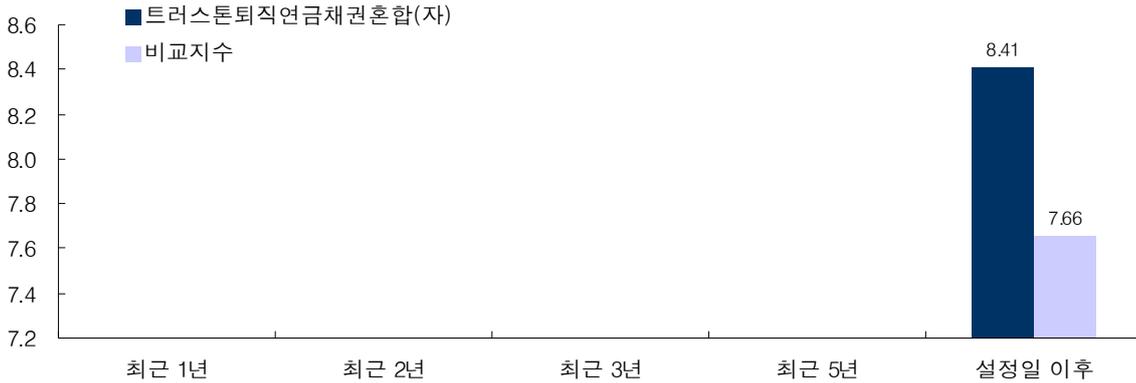
성명	운용기간	비고
계상현	2009.10.03 ~ 2009.12.16	운용개시 전 변경
황성택	2009.12.17 ~ 현재	운용개시 전 변경
안홍익	2009.12.17 ~ 현재	운용개시 전 변경
여종훈	2011.02.15 ~ 현재	-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¹⁾
트러스트투자증권채권혼합					8.41
비교지수					7.66

(주 1) 비교지수 : $(0.35 * [KOSPI]) + (0.60 * [KTB 지수(총수익)]) + (0.05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0.07.15 ~11.01.21			
트러스트투자증권채권혼합	16.07				
비교지수	14.64				

Ⅲ.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3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5	
수탁회사 보수	0.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7	
기타 비용 ¹⁾	0.02	사유발생시
총 보수 비용(TER)²⁾	0.907	
증권거래비용 ³⁾	0.13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1	283	492	1,091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연간, %)

자투자신탁명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기타 비용	합계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트러스톤사모증권 자투자신탁제 1 호 [주식]	0.75	0.05	0.02	0.017	0.04	0.877	없음	없음	
트러스톤사모증권 자투자신탁제 1 호 [주식]	0.75	0.03	0.02	0.017	0.04	0.857	없음	없음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A	0.3	0.5	0.02	0.017	0.02	0.857	납입금액의 0.5%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C	0.3	1	0.02	0.017	0.02	1.357	-	
	Ce	0.3	0.8	0.02	0.017	0.02	1.157	-	
	I	0.3	0.5	0.02	0.017	0.02	0.857	-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연간, %)

자투자신탁명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기타 비용	합계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 투자신탁 [채권혼합]	A	0.3	0.5	0.02	0.017	0.02	0.857	납입금액의 0.5%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C	0.3	1	0.02	0.017	0.02	1.357	-	
	Ce	0.3	0.8	0.02	0.017	0.02	1.157	-	
	I	0.3	0.5	0.02	0.017	0.02	0.857	-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p> <p>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p> <p>실제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imes 1,000$</p> <p>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p> </div>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오후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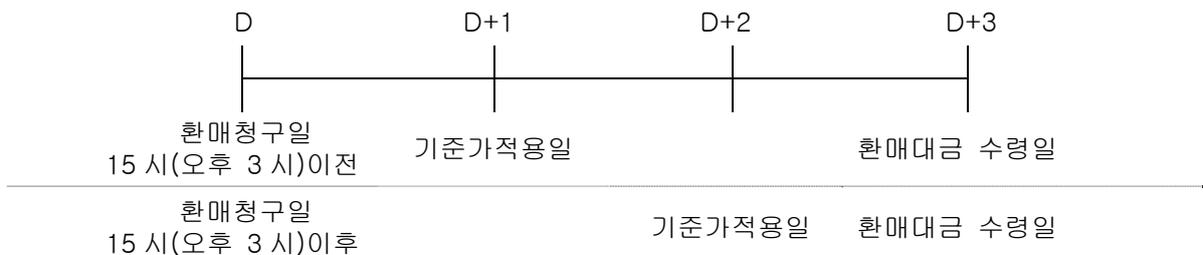
(2)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5 시[오후 3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IV. 요약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2011.01.14)		
운용자산	3,337,905,756		
증권	3,176,118,147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161,787,609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4,872,501		
자산총계	3,342,778,257		
운용부채	0		
기타부채	8,954,810		
부채총계	8,954,810		
원본	3,051,460,359		
수익조정금	174,944,944		
이익잉여금	107,418,144		
자본총계	3,333,823,44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10.07.15-11.01.14)		
운용수익	111,485,409		
이자수익	452,307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111,033,102		
기타수익	209,130		
운용비용	4,026,367		
관련회사 보수	4,026,367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250,028		
당기순이익	107,418,144		
매매회전율	0.00		